

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657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년 8월 11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- 가. 「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」 사무는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창업·경영 지원서비스를 종합적·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창업률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 활성화와 생존율 제고를 통한 소상공인 경영 안정으로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위탁 중인 업무로서,
- 나.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2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소상공인 창업·금융지원과 경영개선에 대한 전문성과 인프라가 확보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재계약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2항」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개요

- 위탁 기간 : 2021. 12. 30. ~ 2024. 12. 29.(3년)
- 위탁수행기관 : 서울신용보증재단(이사장 : 한종관)
- 위탁업무
 -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상담, 교육, 컨설팅 지원
 - 소상공인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을 위한 상권혁신아카데미 운영
 -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문분야 컨설턴트 및 멘토 POOL 운영

- 소상공인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장 시설개선 지원 및 협업화사업 지원
- 한계 소상공인의 폐업충격 완화 및 재기 기회 제공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
- 소상공인 지역별, 업종별 현황 분석 및 각종 통계 정보 제공
(「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시스템」 고도화 및 운영·관리 포함)
- 소상공인 정보제공 및 원활한 종합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포털 관리·운영
- 그 외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, 소상공인회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
- '22년 예산(안) : 10,020,590천원(민간위탁금)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재계약

나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현황

○ 민간위탁 추진 근거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
-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~9조, 제11조
-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

○ 민간위탁 추진현황

- 최초위탁(1차) : 3년('06.4.10~'09.3.31)
- 재 계약(2차) : 3년('09.4.1~'12.3.31), 3개월 연장('12.4.1~'12.6.30)
 - ▶ 민간위탁 개정조례 시행에 따른 의회동의 추진으로 3개월 기간연장
 - ▶ 「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」 민간위탁 재계약 시의회 동의안 가결('12.5.2)
- 재 계약(3차) : 3년('12.7.1~'15.6.30), 3개월 연장('15.7.1~'15.9.30)
 - ▶ 재계약 사전절차로서 민간위탁 종합평가 최초 실시에 따른 기간 연장
- 재 계약(4차) : 3년('15.10.1~'18.9.30), 3개월 연장('18.10.1~'18.12.29)
 - ▶ 10년이상 장기수탁시 공개모집 전환 기준에 따른 재위탁 실시 위한 기간 연장
 - ▶ 「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」 민간위탁 재위탁 시의회 보고완료('18.6.25)
- 재 위 탁(5차) : 3년('18.12.30~'21.12.29, 공개모집 2회 유찰 후 수의협약)

다. 재계약 필요성

-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업무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중소기업·소상공인 자금지원 및 경영지도를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(서울신용보증재단)에 재계약 통한 집행업무 위탁이 타당
 - 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서울시 정책기조 유지 위해 공익성 있는 산하기관이 적합
 - 업무 전문성과 다년간의 실무경험('06년 최초 위탁협약 이후 15년간)이 축적된 기 수탁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소상공인 지원업무의 안정적 추진
 -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업무(고유사무), 자금지원사무(업무대행)와 연계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 시너지 효과 배가 및 기업생존율 제고
-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은 창업준비부터 폐업·재기까지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기존 네트워킹 및 사업 연속성이 요구됨
 -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, 상권혁신 아카데미,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, 지역밀착플랫폼(민관공학 지역협의체 구성·운영) 등의 기존 네트워킹 확보 및 지속적인 사업 수행이 필요

《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 결과 》

- 평가기간 : '21.2.22.~4월('21년 조직담당관 제2차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)
- 평가기관 : (재)한국산업관계연구원
- 평가내용 : 사업인프라, 사업성과, 서비스수준, 만족도 제고노력 등
- 평가결과 : 종합점수 90.74점
 - 지역본부별 창업지원팀 조직개편, 상권분석팀 신설 등 위탁사무에 적합한 구조개선 및 운영
 - 예산과 사업 및 목표달성과의 연계성 확보에 의한 재정집행률, 성과지표 설정 우수
 - 유관기관 인력 및 예산지원 통한 사업활용, 민관 거버넌스 구축 통한 사업지원체계 우수 등
- 개선요청사항 및 운영개선계획 수립완료('21.6.1.)
 - 거버넌스체계 구축 통한 자원봉사자의 활용검토 → 지역활동가 및 대학생 시정인턴 등 활용
 - 인적자원구성에 있어 창업관련 법률 전문가와 직원운영에 관심 둘 것 → 외부전문가에 법무사 3명 총원완료 및 재단 내 법률전문가(변호사 자격) 3명 채용예정('21.8월)
 - 서울시 표기 강화 등 서울시 사업인지도 및 시민접근성 제고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 -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 - 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 - 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-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(경영 및 창업지원)
-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(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)
-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(사무의 위탁)
 - ① 제8조 및 제9조에 대한 사무는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-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(업무)
 -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.

4. 소기업등에 대한 경영지도

나. 기 타

-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(소상공인정책담당관-5958, 21.4.20)
- 제3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('21.5.17.) : 적정
-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('21.7.13) : 적격

※ 작성자 :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소상공인정책팀 장현아 (☎2133-5194)